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203653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2. 발의일자 : 2024년 9월 4일

3. 회부일자 : 2024년 9월 5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한·아프리카재단법」 규정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를 통해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및 제3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미성년자</u>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3. <u>피성년후견인</u>	3. <u>미성년자</u>
4.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삭 제>
5. <u>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u>	<삭 제>

<u>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u>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u>	<u><삭 제></u> <u><삭 제></u>
--	--

2. 주요내용 검토

「한·아프리카재단법」은 2017년 제정된 이후, 2020년 일부 개정¹⁾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

1) 「한·아프리카재단법」

제정 규정(2017.10.31.)	일부개정 규정(2020.5.26.)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u>미성년자</u> 3.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4.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5.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6. <u>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u>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u>미성년자</u> 4. <u>삭제</u> 5. <u>삭제</u> 6. <u>삭제</u>

하도록 수정한 바 있음.

개정안도 이와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재단 임원 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시 결격사유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재단 임원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비교>

구분	재단 임원	국가공무원
규정	현행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좌 동〉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좌 동〉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u>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u>선고유예</u> 를 받은 경우에 그 <u>선고유예 기간</u>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좌 동〉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u>횡령, 배임</u>) 및 제356조(<u>업무상의 횡령과 배임</u>)에 규정된 <u>죄를 범한 자</u> 로서 <u>300만원 이상</u>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분	재단 임원	국가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단의 현행법 제8조는 범죄 일반에 대해 제5호부터 제5호의2까지 실형 선고시와 집행유예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범죄 일반에 대해 실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미성년 대상 범죄, 공무원의 횡령·배임

죄, 중징계처분 등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재단의 결격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 범죄 경력자의 재단 임원 선임 제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에서 종료일부터 2년으로 강화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재단 임원 자격이 한층 강화됨. 이로 인해 임원의 윤리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호의4 나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로 인해 정부 제출안²⁾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계됨으로써 개정 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경제활동 중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취업

2)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임용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정부제출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논의중임.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조항을 포함해 파산선고만으로 직업을 박탈하고 자격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여러 법률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음.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제69조(당연퇴직)과 관련된 사안으로, 개정안의 임원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임.

문 의 처
02) 6788-5270